

정 관



무림페이퍼주식회사



서기 1973년 08월 29일 제정
서기 1975년 12월 18일 개정
서기 1979년 04월 09일 개정
서기 1979년 11월 07일 개정
서기 1980년 08월 20일 개정
서기 1981년 02월 25일 개정
서기 1981년 07월 30일 개정
서기 1981년 10월 30일 개정
서기 1981년 11월 10일 개정
서기 1985년 08월 22일 개정
서기 1986년 02월 08일 개정
서기 1986년 06월 02일 개정
서기 1986년 07월 18일 개정
서기 1987년 05월 28일 개정
서기 1987년 08월 29일 개정
서기 1989년 06월 02일 개정
서기 1989년 07월 01일 개정
서기 1990년 02월 20일 개정
서기 1991년 06월 12일 개정
서기 1994년 06월 16일 개정
서기 1996년 06월 12일 개정
서기 1997년 06월 18일 개정
서기 1998년 06월 18일 개정
서기 1998년 12월 22일 개정

서기 1999년 06월 23일 개정

서기 2000년 03월 21일 개정

서기 2002년 03월 20일 개정

서기 2005년 03월 17일 개정

서기 2006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2006년 07월 21일 개정

서기 2009년 03월 19일 개정

서기 2011년 03월 18일 개정

서기 2013년 03월 22일 개정

서기 2017년 03월 24일 개정

서기 2019년 03월 25일 개정

서기 2022년 03월 24일 개정

서기 2024년 03월 2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무림페이퍼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MOORIM PAPER CO., LTD. (약호 M.P)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1. 펄프제조 및 판매업
2.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3. 지류의 임가공 및 판매업
4. 무역업
5. 기계제작 및 판매업
6. 고지판매업
7. 부동산임대업
8. 창고업
9. 인적용역업
10. 엔지니어링사업
11. 인터넷 관련 사업
12.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4. 조림 관련 사업
15. 유통업
16.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17.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판매 대행업, 중개업
18.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19. 전기 각호에 부대 관련된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제 3 조 (본점과 지점) 본 회사는 본점을 진주시내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분공장 및 현지법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orim.co.kr>)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제 7 조의 2,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 에 따라 발행할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 7 조의 2 (제 1 종 종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고, 이사회결의로 발행한다. 1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하고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④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⑤ 1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전환기간 내에서 1종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⑥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전환기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종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가. 적대적 M&A 가 우려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경우
- ⑦ 제5항 및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1주로 한다.

제 7 조의 3 (제2종 종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고, 이사회결의로 발행한다. 2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한다.
- ② 2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익배당률, 참가적인지 여부 또는 누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2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하는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본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2. 주주는 2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가액은 본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7 조의 4 (제 3종 종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3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3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3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3종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의 2 제5항부터 7항을 준용한다.
- ④ 3종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의3 제3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당해 임, 직원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임직원 및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의 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1 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2 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환청구 기간의 만료일 당시 당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상환기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지급이 완료되는 날의 직전일 까지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와 임시의 2종으로 하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시에 이사회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소집통지와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8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0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2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하여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7 조 (이사)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기의 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에 보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 1명을 보할 수 있고, 필요한 때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을 약간 명씩 보할 수 있다.

제 29 조의 2 (대표이사 등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각각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서 업무 일체를 집행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의 3 (비등기임원)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9 조의 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에 4회, 각 사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이를 각 이사에게 서면 및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이사회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까지,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안과 이사회에의 참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는 이 사회의 규정에 따른다. 이사회는 본 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된 의안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상법, 기타 관련법령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중요업무를 결의한다.

제 33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4 조 (고문 및 지배인)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고문 및 지배인을 둘 수 있다.

제 35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5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의사록)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37 조 (보수 및 퇴직위로금등)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위로금, 공로금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0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 법정준비금
- ③ 임의적립금
- ④ 배당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3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본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 43 조의 2 (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7조의 4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세칙내규) 본 회사 사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1996년 6월 12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4 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년 6월 18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년 6월 18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년 12월 22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본 회사가 발행하여 1998년 12월 22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모 든 전환사채에도 적용된다.

부 칙 (1999년 6월 23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3월 21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3월 20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3월 17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3월 16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7월 21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3월 19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3월 18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3월 22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3월 24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25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7조, 8조, 10조, 14조의2, 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3월 24일)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3월 26일)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